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 11. 22 선고 2021가단115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0. 4.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

다.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8 지분,

라.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4.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43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1/6 지분의,

나.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43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6 지분의,

다.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4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6 지분의,

라.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9. 29. 접수 제9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6 지분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D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43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12 지분의,

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43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18 지분의,

다.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43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1/24 지분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9. 1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이자율 ‘연 19.9%’,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D은 2013. 12. 21.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E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4차19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에게 12,781,994원 및 그 중 11,934,042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다. E은 2021. 5. 20. 원고에게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1. 6. 17.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5. 31.부터 D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 22.9%로 감축하였다.

라. D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일부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21. 7. 16. 기준으로 원금 8,183,514원, 이자 549,371원 합계 8,732,885원이 남아 있다.

마. 한편 D의 아버지인 F는 2016. 8. 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들인 H, I, 피고, J, D, 망 K의 대습상속인인 L, M가 있었고, 그 후 G도 사망하였다.

바. F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통틀어 일컫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F의 상속인들은 2017.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1/6 지분은 D의 적극재산의 전부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D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함안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D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별지1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별지1

목 록

1. 경상남도 함양군 건물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4.1㎡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9.8㎡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4.1㎡
2. 경상남도 함양군 / 대 / 486㎡
3. 경상남도 함양군 / 임야 / 15,074㎡
4. 경상남도 함양군 / 답 / 906㎡
5. 경상남도 함양군 / 도로 / 66㎡
6. 경상남도 함양군 / 전 / 50㎡

별지2

목 록

1. 경상남도 함양군 / 답 / 2,314㎡

별지3

목 록

1. 경상남도 함양군 / 답 / 1,085㎡

별지4

목 록

- | | | |
|-------------|--|----------------------------|
| 1. 경상남도 함양군 | | / 답 / 50m ² |
| 2. 경상남도 함양군 | | / 임야 / 9,223m ² |
| 3. 경상남도 함양군 | | / 임야 / 4,562m ² |
| 4. 경상남도 함양군 | | / 답 / 1,041m ² |
| 5. 경상남도 함양군 | | / 임야 / 1,987m ² |
| 6. 경상남도 함양군 | | / 임야 / 1,164m ² |

